

北유럽核自由地帶 設置에 관한 考察

洪 性 化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目 次

- | | |
|-------------------------|----------------|
| I. 처음에 | IV. 北方 國家들의 提案 |
| II. Kekkonen에 의한 첫번째 시도 | V. 法的인 問題 |
| III. Kekkonen의 두번째 시도 | VI. 맺는말 |

I. 처음에

北유럽에서의 核自由地帶設置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었다. 이 論議의 배경은 核武器의 발달로 北유럽 國家들이 威脅을 받게 된 데서 비롯되어 核武器保有國들이 그 武器를 北유럽 國家들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威脅이 된다고 생각하는 北유럽 國家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그 이유가 된다. 核武器가 北유럽 여러 나라에 威脅이 된다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핀란드의 대통령 Dr. Urho Kekkonen이다. 그는 1978년 5월 8일 스톡홀름에 있는 스위스 國際問題研究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니핵무기(mini-nuks), 정밀유도무기(precision-guided munitions), 수소탄(nutron bombs) 그리고 크루즈미사일(cruise missiles)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러한 武器의 사용은 北유럽國의 安全을 保障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현재 北유럽 國家들은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지는 않다. 北유럽 여러 나라는 非核擴散條約의 당사국들로서 核武器의 保有는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스스로 이 노선을 견고 있으며 핀란드는 “어떠한 武器의 所有나 實驗도 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1947년의 파리평화조약 제17조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北유럽核自由地帶 設置에 대해서는 1970년대 초까지도 널리 論議되지 않았다. 다만 1960년대에 北유럽 國家들간에 보다 넓은 의견교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는 北유럽核自由地帶에 관한 論議가 일부 있었다.¹⁾

사실상 北유럽核自由地帶 設置에 관한 최초의 제의는 中央유럽(Central Europe)에 核自由地帶를 설치하자는 제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1956년 소련은 군비가 制限되고 감시하에 있

1)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비핵지대 설치에 관해서는 B. BROMS, YHDISTYNEET KANSAKUNT, 2nd ed., 1978, pp. 340-346 참조.

는 中央유럽에다 核自由地帶을 두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 核自由地帶은 中央유럽 이웃국가들을 포함하여 東·西獨으로 構成하는 것이었다.²⁾ 이들 국가들은 核武裝된 군부대를 核自由地帶內에 駐屯시키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提案은 國際聯合軍備縮小委員會에서 討議되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國際聯合 제12차 총회에서 폴란드 외상 Rapacki는 이른바 Rapacki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계획(plan)에 의하면 폴란드는 東·西獨이 그 영토에 核武器를 保有하지 않거나 생산도 禁止하겠다는 조건하에서만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에 이 계획은 폴란드를 포함하여 체코, 東·西獨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였다. 이 계획은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核保有國들은 이 核自由地帶에 대해서 核使用을 않겠다는 것이 추가되었다.³⁾

그리고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核自由地帶에 주둔하는 自國의 軍隊들이 核武裝을 않겠다고 하였다.⁴⁾ 여기서 말하는 核武器에는 미사일 장치를 포함하여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에까지 확대되었다. 여기에 추가해서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國 중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核自由地帶에 속하는 정부나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도 核武器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토同盟國, 바르샤바同盟國 그리고 非同盟國들은 核自由地帶을 地上 또는 上空에서 監視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 Rapacki계획은 관계국간에 공식적인 條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선언의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주요 西方國家들은 Rapacki계획이 獨逸의 統一이나 재래식 군비의 制限을 포함한 기타 정치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또 西方國家들은 Rapacki계획은 나토同盟國들보다도 바르샤바同盟國들이 더 선호하고 있다고 結論지었다.

이러한 論爭으로 Rapacki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첫단계로 核自由地帶에서 核武器를 동결하자고 제의하였다.⁵⁾ 두번째 단계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축소는 非核化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수정안은 西方國家들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는 1962년 제네바 18개국 군축회의에서 문제의 그 地帶을 모든 유럽국가에 개방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선 核武器를 동결하고 그 다음 非核化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도 역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964년 2월 29일 폴란드가 내놓은 것은 Gomulka제안이었다. 이 제안의 목적은 비록 그 受容地帶은 동일한 것이었지만 더 제한적인 것이었다. 核武器와 熱核(核融合)은 현차원에서 동결하고 통제차원에서 두 주요한 軍事同盟國들이 통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도 합의에 실패하였다.

2) 1/11. PROBLEME DER. INTERNATIONAL ABRUSTUNG, pp. 508-509 (1964).

3) The Polish Memorandum은 미국외교관계문서 1958. pp. 195-199에 수록되어 있다.

4) Ibid., p. 220.

5) Broms, 북유럽에 있어서 비핵지대의 설치 1975. SCANDINAVIAN STUDIES in LAW. pp. 44-5.

폴란드의 제의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제의는 北유럽非核自由地帶의 설립에 대해 제안됐던 것으로 어느 제안보다도 중요한 差異가 있었다. 1961년 10월 26일 國際聯合 總會 제 1 위 원회에서 스위스 외무장관 Osten Undén이 최초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Undén은 다양한 非核自由地帶를 구체화하고 그 설립은 일반적으로 지지할 가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Undén은 Rapacki계획의 기본원칙은 일반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核武器實驗은 금지되어야 하며 核武器를 갖지 않은 국가들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國際聯合 사무총장은 核武器를 갖지 않은 국가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무기를 제조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문제를 研究하게 하였다.⁶⁾

Undén의 제안은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다. 주요 西方國家들에 의하면 그 제안은 국제적인 감시하에 두고 완전한 軍縮問題를 포함하지 않는 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社會主義國家나 非同盟國을 포함한 소련은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놀랍게도 스웨덴 정부는 대단히 가치 있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은 1963년 말 이전에 條約에 의해서 核武器實驗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⁷⁾ 이 입장은 Undén의 제안을 실패로 이끄는 데 충분한 것이었다.⁸⁾

II. Kekkonen에 의한 첫번째 시도

1963년 5월에 Kekkonen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이른바 Undén提議이다. Kekkonen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⁹⁾ “軍縮競爭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弱小國들은 현존하는 國際的 秩序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핀란드의 安全保障은 北유럽 國家들의 安全保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덴마크, 노르웨이는 나토의 加盟國이며 핀란드, 스웨덴은 중립적 지위에 있다. 이 나라 중 어느 국가도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타국이 그들의 영역에 核武器를 保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미 核自由地帶가 형성되어 있다. 이 地帶는 모든 유럽 國家들의 일방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유럽 國家들의 지위와 안전을 위하여 北유럽核自由地帶聯合에 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은 核武器의 발전이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西方國家들을 국제적인 긴장의 영역 밖에 남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

6) 총회는 찬성 58, 반대 10, 기권 23표로 The Undén Plan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 CO-SPONSORS로서는 오스트리아, 캄보디아, 실론, 에티오피아, 리비아, 수단, 스웨덴 그리고 튀니스이다.

7) 스웨덴의 응답은 1963년 말 이전에 유럽 ZONE이 설치되지 않는 한 스웨덴정부는 현존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관계사정을 재검토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였다.

8) 군비축소 위원회가 1962년 5월에 그 작업을 시작했을 때 비핵지대 설치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Undén Plan도 어떠한 발전이 없었다.

9) 그의 연설문은 Finn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Nordic Nuclear Weapon Zone 1988, pp. 84-85.

다. 사실상 앞에 언급한 것이 북유럽 국가를 커버하는 핵자유지대를 수립하려는 제안의 요지이다. 이것이야말로 핵무기소유를 바라지 않는 북유럽 국가들의安全保障을 강화하는 방책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핵무기取得의 가능성에 관한 한 입장이 같지 않다. 핀란드는 파리평화조약에 따라 어떠한 핵무기의 소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나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계속 선언하여 왔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나토同盟國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각각 그들의 영역에 핵무기를 貯藏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軍事同盟國間에 군사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그들의 정책변화가 요구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역에 핵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되도록 요구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유럽 非核化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정을 변화시켜 非核地帶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설립될 핵자유지대의 성질에 달려 있다. 핵保有國家들은 핵자유지대를 構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핵자유지대에 참여하는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본질적 대상(*quid pro quo*)이 된다. 이러한 보장이 없이는 핵자유樹立에 실제적인 대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74년 10월 15일 Podgorny 의장이 핀란드를 공식방문하는 동안 소련은 핵자유지대를 형성하는 국가들에게 그러한 보장을 해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¹⁰⁾

Podgorny 의장은 계속해서 다른 핵國家들도 그러한 보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보장은 나아가서 非擴散條約(the non-proliferation treaty)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西方核保有國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물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나토 내에서 그들의 同盟國들의 희망이나 반응에 따라 그들의 입장이 좌우되고 있다. 이들 양국은 핵자유지대의 構成국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토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Kekkonen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한 이래 덴마크, 노르웨이 내에서의 정치인이나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들 정치인이나 정부는 핵자유지대 설립에 대한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토의 핵우산을 손질하는 데 대한 대상(*quid pro quo*)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대상으로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정치인들은 핵자유지대에 Kola반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자주 언급하였다. 또 그들은 Kola반도는 핵무기로 중무장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이 포함됐을 때만이 충분한 대가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¹¹⁾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주의깊게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소련이 분명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의 계산은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소련은 非核國이 그들의 영토의 일부를 핵자유지대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검토할 것

10) Broms., *Supra* note 5, at 51.

11) *Protocols of The Nordic Council*, 1964, pp. 1342-1363.

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核自由地帶 설정문제가 끝난 것같이 보였다. 특히 핀란드의 주요 정치인의 성명에서 나타난 것같이 아직도 현안문제이긴 하지만 北유럽核自由地帶 설립에 대한 제안은 신중하게 토의되지 못하고 긴 시간만 흘러갔다.

Ⅲ. Kekkonen의 두번째 시도

1978년 5월 8일 Kekkonen 대통령은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의 작은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核自由地帶設立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¹²⁾ 1963년의 그의 제안을 다시 언급하면서 Kekkonen은 최근 核武器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세계적인 核戰爭의 가능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특히 核戰爭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였다. 또 비록 北유럽 國家들은 核戰爭의 당사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核戰爭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크루즈미사일(cruise missiles)을 들 수 있다.

두 軍事同盟間의 전쟁에 있어서 크루즈미사일은 양대진영 국가들의 상공뿐만 아니라 北유럽 國家 영공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北유럽 國家들 자신이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北유럽核自由地帶에서의 군사적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國際法上 中立國은 타국간의 전쟁중엔 자국의 영토를 방위할 의무만을 갖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北유럽 國家들이 자국의 상공을 나르는 크루즈미사일에 대해서 행동을 취한다면 커다란 위협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사적 충돌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核武器나 미사일이 그들의 상공에 진입하기 전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영공을 방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반격 그리고 방위전략을 수행하는 동안 北유럽 國家들의 지위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려는 Kekkonen 대통령으로 하여금 北유럽 國家들이 그들 자신과 주요 군사대국들 간에 무기통제에 관한 교섭을 취하도록 제의하였다. 그 교섭의 목적은 北유럽 國家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Kekkonen 대통령은 北유럽 核自由地帶設立의 제안은 그 직접성(immediacy)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다시금 중요하게 고려할 시기가 성숙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963년 kekkonen 대통령은 그의 Idea를 한걸음 발전시킨 것 이외에 아무 것도 다루지 못했다.¹³⁾ 1978년 Kekkonen 대통령은 그가 협정체결에 필요한 것으로 여겼던 세 요소를 작성하였다. 그 첫째 요소는 관계국가의 安全保障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두번째 요소는 전략적으로

12) 연설문에 대해서는 FINISH MINISTRY, Supra note 9, pp. 91-98.

13) Boms., Supra note 5, p. 47.

나 군사적 이해를 가진 주요국가들은 처음부터 교섭에 참가하여야 한다. 셋째 요소는 核自由地帶을 형성하는 제국을 어떠한 이유로도 核自由地帶을 형성하는 국가의 영토에 대하여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보장은 北유럽 國家들의 영공이 미사일의 공격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을 위해서 核自由地帶 설립에 관한 교섭은 강제(coercion)나 압력(pressure)을 가하지 않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의 諸國의 반응은 역시 留保의이었다. 이 제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정부는 소련이 특히 Kola반도를 核自由地帶에 포함시킬 때까지는 더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그 자신의 영토를 核自由地帶化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IV. 北方 國家들의 提案

스칸디나비아 諸國의 의심의 결과로서 핀란드 정부는 北유럽 國家間의 어떠한 협상도 제의하지 않았다. 1978년 11월 11일 스웨덴 외무장관 Hans Blix는 核自由地帶의 設置를 그의 연설에서 역설하였다. 그는 核自由地帶에 Balthic Sea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조건은 소련이 Balthic Sea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노르웨이 대사 Jen Evensen이 核自由地帶 설치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1980년 10월 3일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1978년 Kekkonen 대통령이 제의한 노선에 따르는 한 결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의 성명은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르웨이 정부는 즉각 반대를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랜 토의가 계속된 끝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타협에 의하면 核自由地帶設置에 관한 idea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그 非核地帶는 北方國家를 포함하여 중앙유럽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직도 核自由地帶에는 균형(symmetry)이 필요하며 소련은 Kola반도를 그 일부라도 核自由地帶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노르웨이 정부의 조건에 대해서 소련은 아직도 찬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소련의 Leonid Brezhnev 의장은 발전적인 정책을 폈다. 핀란드의 한 일간신문 *Suomen Sosialidemokratti*과의 인터뷰에서 Brezhnev 의장은 소련은 현재 核自由地帶에 Kola반도의 일부를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발표는 소련의 중요한 정책의 변화로서 핀란드를 기쁘게 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 諸國의 核自由地帶設置에 가장 중요한 기

여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Brezhnev 의장은 소련이 核自由地帶에 대한 보장국으로서 核自由地帶의 安全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토국과 더불어 소련이 공동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지만 스칸디나비아 諸國은 매우 주의깊은 태도를 취하였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정부는 非核地帶의 설정이 단순히 北유럽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全유럽을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후 많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사정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核自由地帶에 관한 논의는 특히 스웨덴에서 1982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1983년 1월 스웨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核自由地帶가 설치된다면 스칸디나비아의 서쪽 국경으로부터 남쪽까지와 소련 변경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⁴⁾

소련은 스웨덴 提案의 주요내용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제안된 核自由地帶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소련이 생각하는 비핵지대는 두 軍事Bloc을 나누는 양척의 경계선에서 250km에서 300km나 되었다. 핀란드 정부도 역시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스웨덴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로부터 남쪽에 核自由地帶를 확장하는 안에 만족을 표명하긴 했지만 더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스웨덴案이 제안된 이래 덴마크 의회의 多數派들은 北유럽核自由地帶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회의 多數派는 이 地帶의 설치에 관한 좀더 신중한 연구를 요구하는 몇 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덴마크 외무장관 Ellemen-Jensen은 1985년 11월에 덴마크의 공식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⁵⁾ 그는 北유럽 國家들과 더불어 이미 核自由地帶를 형성했으며 北유럽 國家들은 현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조약의 수단에 의해서 核自由地帶를 설립하는 문제에 관한 한 덴마크는 나토(NATO)의 회원국으로서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덴마크의 방위전략은 나토의 戰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核自由地帶 설립은 덴마크가 나토의 핵우산의 보호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덴마크는 나토 구성국과의 유대를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다. 1984년 덴마크 의회의 특별위원회(The Dyving Committee라 칭함)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동 위원회는 고립된 核自由地帶 설치하는 덴마크 방위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나토의 구성국들은 방위에 있어서 덴마크의 연대에 의존하는 군사적 전략계획을 더 이상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北유럽核自由地帶의 창설이 核武器를 덴마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14) 스웨덴 수상 Olof Palme는 1983년 6월 1일 헬싱키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15) DANISH FOREIGN OFFICE, NO. 31 SPORMALET OM EN KIERNEV-APENFRI SONE I NORDEN 1985, pp. 63-64.

수 없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의견이었다.

얼마 후에 덴마크 의회는 安全保障委員會를 설립하였다. 이 委員會는 덴마크 방위를 위한 정책선택에서 만장일치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고 특히 北유럽核自由地帶設置에 관한 한 의견대립이 여전하였다.

1982년 노르웨이 정부는 안보정책에 근거하여 의회에 한 보고서(No. 101)를 제출하였다.¹⁶⁾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만일 노르웨이가 北유럽核自由地帶에 참가하기로 결정한다면 노르웨이는 평시뿐 아니라 전시에 있어서 核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해법은 核武器가 영토 내에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현재의 방위정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다른 결정을 할 선택권이 있다는 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정책의 변경은 현재의 사정이 전적으로 자의적인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르웨이에 개방되어 있다.

安全의 保障에 관한 한 노르웨이 정부의 보고서는 소련이 제의한 부정적인 安全에 대한 保障이 노르웨이의 방위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 諸國과의 광범위한 협의 없이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北유럽核自由地帶 설치에 대해서는 나토 구성국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984년 5월에 의회의 外務分科委員會가 한 보고서를 준비했다.¹⁷⁾ 이 보고서도 역시 1982년 노르웨이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의회에서 토의 결과 노르웨이 외무부는 1984년에 北유럽核自由地帶設置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Colding Committe라고 불리는 委員會를 설치했다. Colding委員會의 보고서가 1985년 11월 출간되었다.

Colding보고서는 北유럽核自由地帶의 설치에 나토 내에서 노르웨이의 회원국 지위와는 반드시 상반될 수 없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核自由地帶는 나토의 방위전략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核自由地帶에 참여하는 것은 나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核保有國의 참여와 더불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核自由地帶는 北유럽 國家들만을 커버하는 한 가지 목적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커버하여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의 노르웨이 정책에 따라 보고서는 核自由地帶를 특히 Kola반도를 포함하여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있는 지역에도 커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altic지역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核自由地帶의 지리적 확장을 통해서 이 보고서는 재래식 무기도 토의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소련은 Kola반도와 Baltic지역에 있는 재래식 병력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부

16) Innst. S. nr., 225 (1983-1984) 참조.

17) 핀란드 외무부, Supra note 9, pp. 56-58

가해서 동독과 폴란드에 있는 재래식 무기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은 非核地帶를 형성하는 다른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체계를 적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Colding보고서는 北유럽 國家들의 고위급 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2년마다 열리는 외무장관회의에서 현안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이슬란드가 核自由地帶에 참여하는 문제는 Kekkonen 대통령이 제안한 초기의 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얼마 후에 아이슬란드는 核自由地帶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85년 3월에 아이슬란드 외무장관 Hall Grimsson은 核自由地帶化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¹⁸⁾ 이 보고서는 核自由地帶 설립이 아이슬란드의 安全保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核自由地帶가 과연 다른 北유럽 國家들의 安全保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역시 의심스럽게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1985년에 核自由地帶의 설치에 관해서 토의를 하여 1985년 5월에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決議案을 채택하였다. 이 決議案에는 核自由地帶 설치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정하지 않았으나 의회의 外務分科委員會는 核自由地帶에 아이슬란드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관해서 조사할 것을 제의하였다. 1986년 4월에 새로 임명된 외무장관 Matthiesen은 核自由地帶의 설립과 동일하게 재래식 무기의 균형성을 조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 문제는 나토 構成國 간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왜 아이슬란드가 北유럽核自由地帶 協義에 참가하지 않는가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核自由地帶 설치에 대한 견해는 北유럽國間에 차이가 있는 한편 北유럽 國家들은 核自由地帶의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확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핀란드는 항상 核自由地帶 설치에 긍정적이었으며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덜 열심이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이슬란드는 물론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견해도 항상 유보적이었다. 이것은 非核地帶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제안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보면 알 수 있다.¹⁹⁾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나토의 會員國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北유럽核自由地帶 會議에 참가해야 했을 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반면에 나토의 會員國의 입장으로서서는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나토가 會員國에 核武器의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동맹의 지위를 잃어버릴

18) Ibid.

19) 이것은 Olof Paalme 수상이 연설에서 제의하였다. Supra note 14.

위험이 있다. 나토의 주요 會員國들이 核自由地帶의 설치를 허용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나토 會員國들이 核自由地帶를 형성하는 모든 국가에 부정적인 保障을 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러한 사정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요 나토 會員國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유럽에 있어서 核自由地帶 설치에 관한 일반적 유보는 프랑스, 영국, 미국의 군사전략의 특징이다.²⁰⁾ 北유럽核自由地帶에 관한 한 프랑스, 영국, 미국 등 3국은 核自由地帶의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核自由地帶는 비교적 좁고 나토나 바르샤바 同盟國들이 지리적으로 상호간에 밀접한 곳에 설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 영국, 미국은 核自由地帶를 형성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나토의 견해에 의하면, 北유럽核自由地帶는 현재 전략상으로 어떠한 강제도 받고 있지 않다. 사실상에 있어서 특히 미국 정부는 北유럽核自由地帶는 소련이나 바르샤바 同盟國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地帶에 참여하는 나토 會員國의 영토 내에 核武器를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核自由地帶를 형성하는 국가에 대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은 核武器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北유럽核自由地帶의 설치에 대해서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영국, 미국은 자국에 대한 공격이나 나토 會員國 중 어느 나라에 대한 공격을 행한 국가나 核自由地帶에 속하는 국가나 核武器를 갖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核攻撃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

나토의 主要 會員國에 의한 이러한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정부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들 정부들은 또 소련이 北유럽에 있어서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核選擇은 하나의 중요한 평형추(counterweight)라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나토의 군사전략상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명백하다.

소련의 의견에 의하면 소련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결론이다. 소련이 앞으로 설립될 核自由地帶의 일부로 소련 영토의 일부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²¹⁾ 중국은 北유럽核自由地帶 설립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核武器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또한 核自由地帶에 속한 국가에 대해서는

20) 1974년 10월 21일에 상원의원 Symington이 국제연합총회 제1회 위원회에서 언급하기를 미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이행될 수 있다면 비핵지대의 설치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였다.

- (1) 비핵지대의 설립은 관계지역 국가에 의해서 제외되어야 한다.
- (2) 그 지역의 모든 국가는 비핵지대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필요한 안전보장 협정이 방해받아서 안 된다.
- (4) 만족할 만한 검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1) Chernenko 의장은 소련은 비핵지대의 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북방국가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1985년 확인한 바가 있다.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축협상에서 채택된 공통적인 전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소련의 긍정적인 태도는 나토 會員國들이 채택한 부정적인 태도에 그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방 당사국이 협상을 제의하면 관계당국의 찬성을 의심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²²⁾ 그러므로 과거에는 많은 훌륭한 제안들이 일반적인 軍縮協商에서 거부되었다. 北유럽核自由地帶에 관한 한 이러한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核自由地帶 설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든 關係當事國들이 충분히 토의하여야 하며 모든 관계사정을 고려하여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V. 法的인 問題

核自由地帶 설치에도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核自由地帶가 창설되었을 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적용하여야 할 법적인 방법을 정상적으로 선택하는 일이다. 北유럽核自由地帶에 관한 한 두 가지 중요한 대안이 있다. 즉, 多者協約이나 일방적 선언이나이다. 많은 대안에서 첫째로 언급된 대안을 검토한다. 이들 대안 중 어떤 대안은 순수하고 실제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나 協約의 방법은 관계국간의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그들 국가간의 國際會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두 경우에는 협상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제기되는 특정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를 표명하는 지위에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多者間 協商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다. 多者間 협상은 일방적 선언을 포함하여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도 더 실제적이다.

부정적이고 保障 없는 北유럽核自由地帶의 설치를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이 그러한 保障이나 또는 적어도 保障의 제 조건은 協約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保障은 保障國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核自由地帶의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명해야 한다. 소련 영토의 일부가 그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保障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공식화되어야 할 것이다.²³⁾

입증해야 할 문제들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야기됐지만 최근의 軍縮協商의 발전에 따라 입증해야 할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입증이 채택되어질 多者協約의 當事國들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또는 國際原子力委員會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Tlateloco條約은 國際原子力委員會가 어떻게 운영기구로서 이용되고 있는가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인 법적 문제에 부가해서 해답을 찾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北유럽

22) Broms, Supra note 5, pp. 54-55.

23) 국제원자력위원회 운영체제 참조.

核自由地帶에 Baltic Sea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문제에는 공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도 일어난다. 北유럽核自由地帶를 형성하는 국가의 영해를 통항하는 無害通航權에 관한 한 이 문제의 해결은 국제관습법규와 새로운 해양법에 포함된 법규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核武裝한 선박의 운항에 관한 문제 또는 Baltic Sea에서 核物質을 운반하는 군함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²⁴⁾

核自由地帶를 덴마크 통제하에 있는 Faeroese Islands, Greenland에까지 확대된다면 이것들은 多者條約의 채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가운데에는 協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분명히 協約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모든 當事國의 比準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Tlateloco條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⁵⁾ 協約이 효력을 갖는 동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예는 北유럽核自由地帶를 설립하기 위한 協約을 채택하는 과정에 나타난 법적 문제들이다. 이 외의 어려운 문제들이 協約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수에 달려 있으며, 유럽核自由地帶의 범위,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를 커버하는 지역의 확대에 달려 있다.

VI. 맺는 말

北유럽核自由地帶를 설치하는 문제는 北유럽 國家內에서 그리고 強大國間의 오랜 동안 토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도 맺지 못하고 있다. 北유럽 國家들의 오랜 침묵 끝에 최근 몇 년 동안에 다시금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관계국간에 의견의 교환을 통하여 北유럽 國家의 外무당국은 核自由地帶에 관한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일반적으로 北유럽核自由地帶의 설치에 제한된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광범위한 군축협상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北유럽 國家들은 “wait and see”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어떠한 北유럽 國家도 다른 나라의 의견에 영향을 끼칠려고 하지 않았다. 장래의 발전은 강대국간의 협상에 달려 있다. 北유럽 國家와 核保有國家間에 계속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첫단계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아진다.

문제는 軍事的 同盟國과 나토 構成國間의 좀더 깊은 이해심을 바탕으로 노력할 때만이 北유럽 國家의 核自由地帶 설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24) 해양법협약 제23조 동협약 제7조 U.N. Doc A/conf. 62/122.

25) Garcia-Robbles, The Catin-American Nuclear Weapon Free Zone, in The Arms Race AT. A Time of Decision, Anals of Pugwash, 1983, pp. 215-216 (Rotblatt & Pascolini eds 1984).

그리고 北유럽核自由地帶의 설치는 關係국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1.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90.
2. Burns,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 1980.
3. O'connel, D.P., International Law, 1970.
4. Leech,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1973.
5. Stark, J.G., An Internation to International Law, 1984.
6. Boms, B., YHDISTYNEET KANSKUNT 2nd ed, 1978.
7. Protocols of The Nordic Council, 1964.
8. DANISH FOREIGN OFFICE, No. 31 Spormalet om en Kiernev-Apenfri sone, Norden, 1985.
9. Garcia-Robbles, The Catin-American Nuclear Weapon Free Zone, 1984.
10. Sztuoki, Current International Law Issues; Nordic Perspectives, Kluwer Academic, 1994.

SUMMARY

A Study of Proposals to Establish
a Nordic Nuclear-Weapon-Free Zone

Sung Wha Hong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The matter of setting up a Nordic Nuclear-Weapon-Free Zone had long been discussed among not only Nordic countries but also nuclear powers, but with no practical result.

Only recently after a long silence, however, special attention has been increasingly drawn to this issue. The Nordic nations' foreign authorities, in particular, has expressed their great interest in it by conducting researches on a steady basis.

The fact of general acception has been that it should be addressed not as a fixed phenomenon, but as part of a wide range of arms control negotiations. That is why the nations of northern Europe has adhered to the posture of "Wait and See."

No country in northern Europe has ever tried to influence the view of any other nation in this regard. In the days ahead,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Nuclear-Weapon-Free Zone in northern Europe depen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Powers, or nuclear powers.

Especially in light of the continued negotiations being carried out among the Nordic nations, it is necessary, above all, to reduce tension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In addition, it seems not possible to set up the nuclear-free zone until the member states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nd their allies, including the member states of the Warsaw Treaty Organization, deal with this affair seriously on the basis of deeper understanding of it.